

수원지방법원 2021. 10. 13 선고 2020가합2699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맥

담당변호사 허경모

변 론 종 결 2021. 9. 1.

판 결 선 고 2021. 10. 13.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20. 6. 15.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C, D, E, F에게 위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B의 국세 체납

B은 건설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2016. 1기, 2017. 1기 부가가치세 및 2016년 ~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이에 대한 가산금 합계 1,484,057,19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을 체납하였다. 2020. 8. 13. 기준 그 상세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 원)

세 목	귀속	고지일	납부기한	고지세액	체납액
종합소득세	2016	2019.06.05.	2019.06.30	202,221,830	228,005,060
종합소득세	2017	2019.06.05.	2019.06.30	327,780,950	369,572,920
부가가치세	2016	2019.06.05.	2019.06.30	349,912,940	394,526,740
부가가치세	2017	2019.06.05.	2019.06.30	436,321,500	491,952,470
합 계				1,316,237,220	1,484,057,190

나. B과 피고 간의 분쟁 경과

피고는 2016. 10. 2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B이 성남시 분당구 G아파트 H호 및 인천 남구 I아파트 J호를 매수할 때 그 매매대금을 빌려주었다며 287,947,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다. 이에 B이 이의하여 같은 법원 2016가합104482호로 본안소송 절차가 진행되었는데, 소송 도중 B은 피고에게 2017. 5. 5. 500만 원을 변제하였고, B과 피고는 2017. 8. 2. 추가로 ‘2008. 2. 5. 기준 대여금은 287,941,100원이고 B이 안성에서 공사대금을 받으면 피고에게 제일 먼저 변제한다. 단 B이 2017. 10. 2.까지 피고에게 원금 전액을 갚을 때는 이자를

면제한다. 피고와 B은 위 서류에 서명함과 동시에 소를 취하한다'라는 내용의 약속증서(이하 '이 사건 약속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위 약속증서에 따라 같은 날 위 대여금 청구의 소를 취하하였다.

다. B의 피고에 대한 채권양도

1) C, D, E, F은 2017. 8. 25. B 등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B이 시공한 안성시 소재 공동주택에 관하여 본인들이 과다지급한 공사대금의 반환청구 및 지체상금, 하자보수비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B은 위 사건의 원고들에 대하여 미지급 공사대금 등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가합11119호(본소), 2017가합10093(반소)]. 위 법원은 2020. 6. 4. 아래와 같이 D의 B에 대한 본소와 B의 C 외 3인에 대한 반소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B이 패소부분에 관하여 수원고등법원 2020나16972호로 항소하여 그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1. 피고(반소원고) B은 원고(반소피고) D에게 42,033,4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9.부터 2020. 6. 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반소원고) B에게 257,901,7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0.부터 2020. 6.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 C은 피고(반소원고) B에게 37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B과 피고는 위 1심 판결 선고 후인 2020. 6. 15. 위 판결금 채권을 아래와 같이 피고에게 양도하는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는 B으로부터 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20. 6. 15.경부터 2020. 6. 22.경까지 C 외 3인에게 위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채권양도계약서

양도인 B

양수인 피고

1. C 외 3인과 양도인 사이에 진행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가합11119호(본소) 손해배상(기), 2017가합10093(반소) 공사대금 사건의 판결에 따라 양도인이 가지는 판결금 채권 중 C, D, E, F에 대하여 가지는 판결금 채권 일부인 2억 원과 그 이자(판결 주문 제2항)와 C에 대한 판결금 채권 3억 7,600만 원과 그 이자(판결 주문 제3항)를 양수인에게 양도한다.

2. 양도인은 이 건 채권양도·양수계약 체결 사실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가합11119호(본소), 2017가합10093(반소) 사건에서 판결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자인 C, D, E, F에게 통지할 권한을 양수인에게 위임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될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 충족사실을 인식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1985. 1. 22. 선고 83누279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참조). 한편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고(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제4호),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조세채권 중 부가가치세 채권은 이 사건 채권양도 전인 2016. 6. 30. 및 2017. 6. 30.에 각 과세기간이 종료되었고, 종합소득세 채권도 마찬가지로 2016. 12. 31. 및 2017. 12. 31. 각 과세기간이 종료됨으로써 위 각 채권은 모두 추상적으로 성립하였고, 이후 무신고결정으로 2019. 6. 5. 이전에 모두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나. 사해행위

1)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 내지 채권양도를 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이는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 내지 채권양도를 받은 액수 및 양도받은 채권 중 실제로 추심한 액수,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관계, 채무자의 변제능력 및 이에 대한 수익자의 인식, 변제 내지 채권양도 전후의 수익자의 행위, 그 당시의 채무자와 수익자의 사정 및 변제 내지 채권양도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60822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B이 이 사건 채권양도 이전에 원고에 대하여 가산금을 제외하더라도

1,316,237,220원의 조세채무 및 피고에 대하여 2008. 2. 5. 기준 287,941,100원의 대여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 및 증인 B의 증언에 의하면 B은 주택건설업을 운영하며 그 외에도 14명 정도의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녹취서 제11면), B은 위 판결금 채권 합계 633,901,780원(= 주문 제2항 C 외 3인에 대한 연대채권 257,901,783원 + 주문 제3항 C에 대한 376,000,000원의 채권) 외에 특별한 재산이 없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B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런데 B은 이러한 채무초과상태에서 실질적으로 본인의 책임재산 전부에 해당하는 위 판결금 채권 대부분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사실상 피고만 채권의 만족을 얻게 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B의 무자력 상태를 심화시키고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7. 8. 2. 체결된 이 사건 약속증서에 기한 합의에 따라 B이 안성시 소재 공동주택

공사현장에서 받을 공사대금을 대신 지급받기로 하고 B에 대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취하한 것이고, 피고는 위 합의에 따라 기존의 채무 본지에 따른 이행을 위하여 B이 안성시 소재 공사현장의 건축주들인 C 외 3인과의 소송에서 일부승소한 판결금 채권을 양도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피고가 2016. 10. 25. B에게 대여금 287,947,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7. 8. 2. B이 C 외 3인으로부터 도급받아 신축하고 있던 안성시 소재 공동주택 관련 공사대금을 받으면 피고의 대여금을 제일 먼저 변제하고, 2017. 10. 2.까지 원금을 변제하면 이자는 면제하는 내용의 이 사건 약속증서를 작성하고 위 대여금 청구의 소를 취하하였고, 이후 B이 위 안성시 소재 공동주택 공사와 관련하여 C 외 3인과의 소송에서 일부승소한 다음 그 판결금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고는 B에게 2008. 2. 5. 빌려준 대여금을 약 8년 가까이 변제받지 못하다가 2016. 10. 26. 대여금 소송을 진행하였던 점, B은 이 사건 약속증서에 기재된 2017. 10. 2. 이후에도 B이 계속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던 점, 이처럼 피고는 B으로부터 대여금을 약 10년 가까이 변제받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과거 B과 경매 관련으로 동업을 하기도 한 사이로서 B의 재산상태에 관해서 충분히 알 수 있는 관계에 있었던 점, 비록 피고가 이 사건 약속증서 작성 후 대여금 청구의 소를 취하하기는 하였으나 만일 위 대여금 소송이 진행되어 판결이 선고되었더라도 피고가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면 이를 그 채권의 채무자인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원상회복하는 것이 원칙이므로[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71186, 2011다71193(병합) 판결 등 참조], 피고는 C, D, E, F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평균, 판사 김동석, 판사 이은경

[별지]

B(주민등록번호 1 생략)이 소청[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가합11119(공사대금)
및 2017가합10093(손해배상)] 확정으로 C, E, D, F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일체. 끝.

